
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 (제12조제3항 관련)

구 분	경 력	재직연수 환 산 율
일반직공무원경력 (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경력은 제외한다)	1.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.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한 경력	100%
유 사 경 력 (연구직공무원 에게만 적용한다)	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 2.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 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	80% 50%